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금연단속)

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
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8년 12월 5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담당직무 내용	근무예정부서
금연구역 단속분야	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"마"급 (주 20시간)	2명	채용일로부터 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금연구역(시설)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◦ 금연구역(시설)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◦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처리◦ 금연사업 홍보 및 계도, 업무지원	지역 건강과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◦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지역 · 연령 ·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 시 자 격 요 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"마"급	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◆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

- 금연, 교통, 환경,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지도단속 분야 경력

◆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
하지 아니한 자

4. 보수수준

- 근무시간 : 주 20시간 (1일 4시간)
- 보수수준 : 연봉 10,200천원
-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12. 17.(월) ~ 12. 21.(금) <5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 (우편 · 팩스 · 인터넷 접수 불가)
- 접수처 :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(보건소 5층)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1차 서류전형	2018. 12. 26(수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18. 12. 27.(목)	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·보건소 홈페이지 공고
2차 면접시험	2019. 01. 02.(수)	서대문구보건소 (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)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19. 01. 03.(목)	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·보건소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·보건소 홈페이지 공고
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,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, 유효기간의 경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 기준 부합여부 판단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: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·보건소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·보건소 홈페이지 공고

- 임용후보자 등록 후 결격사유 확인 등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(별지 1호) 1부
 - 응시수수료 : 5,000원 (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)
- ② 이력서(별지 2호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 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등)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- ③ 자기소개서(별지 3호) 1부
- ④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4호) 1부
-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5,6호) 각 1부
- ⑥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 -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⑦ 주민등록초본 1부 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*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(www.sdm.go.kr)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(☎ 02-330-825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